제 68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12월 17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기흥동주민센터 담당자 : 이 혜진 문의전화 : 031)324-6667)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양**	양** 1961-06-11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82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8-10-09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82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85-09-22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82번길	무단전출
최**	최** 1990-03-09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82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3항).

2018년 12월 06일

기흥동장 인